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정심판국에 운전면허심판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2.12.27.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청탁금지제도과 및 행동강령과”를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9호의4부터 제9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9의5.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권고

9의6.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대한 관리·지원

9의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의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
· 분석 등

9의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해석 및 질의회신

9의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의 운영
2.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등
3.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제6조의2제3항제6호 중 “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이하 “부패 관련 각종”을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 중 “부패 관련 각종”을 각각 “부패 행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3호 및 제14호 중 “공익신고자”를 각각 “신고자”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및 제15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제8호 및 제9호 중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를 각각 “신고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심판총괄과·행정교육심판과·재정경제심판과·국토해양심판과·사회복지심판과 및 환경문화심판과”를 “행정심판총괄과·행정교육심판과·재정경제심판과·국토해양심판과·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및 운전면허심판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법제처·병무청·방위사업청·경찰청·소방청”을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

전부·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법제처·병무청·방위사업청·경찰청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은 제외
한다)·소방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운전면허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
는 사항

제9조의2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부패 관련 각종”을 각각 “부패
행위 등”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한시정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
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484”를 “4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6”을 “472”로 하
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을 “11”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0”을 “39”로 하며, 검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
관·부감서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임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7”을 “155”로 하고, 행정주사 · 감사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 관세주사 · 농업주사 · 마약수사주사 · 방송통신주사 · 보건주사 · 보호주사 · 사회복지주사 · 세무주사 · 시설주사 · 식품위생주사 · 임업주사 · 전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 통계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8”을 “13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87”을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9”를 “47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을 “11”로 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0”을 “39”로 하며, 검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임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7”을 “155”로 하고, 행정주사 · 감사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 관세주사 · 농업주사 · 마약수사주사 · 방송통신주사 · 보건주사 · 보호주사 · 사회복지주사 · 세무주사 · 시설주사 · 식품위생주사 · 임업주사 · 전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 통계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8”을 “13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6”을 각각 “55”로 하고, 행정사무관 “3”을 “2”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의 시행으로 신설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청탁금지제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7]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5조 관련)

제15조 관련 한시정원(준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 감사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 관세주사 · 농업주사 · 마약수사주사 · 방송통신주사 · 보건주사 · 보호주사 · 사회복지주사 · 세무주사 · 시설주사 · 식품위생주사 · 임업주사 · 전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 통계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③ (생략) ④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10. (생략) 11. <u>부패방지·공익보호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u> 12. ~ 33. (생략) ⑤ ~ ⑦ (생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10. (현행과 같음) <u><삭제></u> 12. ~ 3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부패방지국) ① (생략) ② 부패방지국에 청렴정책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영향분석과, <u>청탁금지제도과 및 행동강령과</u> 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의3. (생략) <u><신설></u>	제6조(부패방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u> ----- <u>기술서기관</u> 으로, <u>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u> 장은 <u>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u> ----. ③ ----- -----. 1. ~ 9의3. (현행과 같음) <u>9의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0.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설>

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9의5.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권고

9의6.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 관에 대한 관리·지원

9의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의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9의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해석 및 질의회신

9의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의 운영

2.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등

3.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제6조의2(심사보호국) ①・② (생략) ③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공익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행동강령 위반 <u>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u>(이하 “부패 관련 각종 신고”라 한다) 관련 통계의 관리·분석 및 활용 7. <u>부패 관련 각종 신고</u>에 대한 안내·상담 지원 7의2. <u>부패 관련 각종 신고</u>의 접수 및 분류 8. <u>부패 관련 각종 신고</u>의 배정 이후 부서 간 이견 조정 9. ~ 28. (생략)	<u>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4. <u>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u> 5. <u>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u> 제6조의2(심사보호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 <u>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u>(이하 “부패행위 등 ----- ----- 7. <u>부패행위 등</u> ----- ----- 7의2. <u>부패행위 등</u> ----- ----- 8. <u>부패행위 등</u> ----- ----- 9. ~ 28. (현행과 같음)
--	--

④ ~ ⑥ (생략)

⑦ 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조치

14.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불응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련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

15의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련된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16. (생략)

⑧ 신고자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상담·접수 및 조사

9.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구조금의 지급·환수 및 대위청구에 관한 사항

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신고자-----

14. 신고자 -----

<삭제>

<삭제>

16. (현행과 같음)

⑧ -----
-----.

1. ~ 7. (현행과 같음)

8. 신고자 -----

9. 신고자 -----

<삭제>

금지·제한 등에 관련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10의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련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11. (생략)

⑨ (생략)

제8조(행정심판국) ① ~ ③ (생략)

④ 행정심판국에 행정심판총괄과·행정교육심판과·재정경제심판과·국토해양심판과·사회복지심판과 및 환경문화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생략)

⑥ 행정교육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법제처·병무청·방위사업청·경찰청·소방청,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

<삭 제>

11.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제8조(행정심판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행정심판총괄과·행정교육심판과·재정경제심판과·국토해양심판과·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및 운전면허심판과-----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법제처·병무청·방위사업청·경찰청(「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

하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 소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행정기관으로서의 소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 4. (생략)

⑦ ~ ⑩ (생략)

<신설>

제9조의2(정부합동민원센터) ①

~ ⑤ (생략)

⑥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사

하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 소방청-----

2. ~ 4.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운전면허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9조의2(정부합동민원센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항을 분장한다. 1. <u>부패 관련 각종 신고에 관한 안내·상담</u> 2. <u>합동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부패 관련 각종 신고의 전자정보시스템 등록 및 이관</u> 3. <u>부패 관련 각종 신고에 관한 방문 민원의 접수</u> 4. <u>삭 제</u> 5.·6. (생 략) ⑦ ~ ⑩ (생 략) <u><신 설></u>	-----. 1. <u>부패행위 등</u> ----- ----- 2. ----- <u>부패행위 등</u> ----- ----- 3. <u>부패행위 등</u> ----- ----- 5.·6.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u>제15조(한시정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u>
---	---

신·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484</u>		<u>480</u>	-4	
일반직	.		.		.		
계	.		.		.		
			<u>476</u>		<u>472</u>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		.		
	.		.		.		
			<u>10</u>		<u>11</u>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		.		
			<u>40</u>		<u>39</u>	-1	
	.		.		.		

검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임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	<u>157</u> · ·	<u>155</u> · ·	-2
행정주사 · 감사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 관세주사 · 농업주사 · 마약수사주사 · 방송통신주사 · 보건주사 · 보호주사 · 사회복지주사 · 세무주사 · 시설주사 · 식품위생주사 · 임업주사 · 전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 통계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 ·	<u>138</u> · ·	<u>136</u> · ·	-2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87</u>	• <u>483</u>	-4
일반직 계	• • <u>479</u>	• • <u>475</u>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 <u>10</u>	• • <u>11</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u>40</u>	• <u>39</u>	-1
• •	• •	• •	

검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임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	<u>157</u> · ·	<u>155</u> · ·	-2
행정주사 · 감사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 관세주사 · 농업주사 · 마약수사주사 · 방송통신주사 · 보건주사 · 보호주사 · 사회복지주사 · 세무주사 · 시설주사 · 식품위생주사 · 임업주사 · 전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 통계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 ·	<u>138</u> · ·	<u>136</u> · ·	-2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정부합동민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56</u>		<u>55</u>	-1	
일반직		계	<u>56</u>		<u>55</u>	-1	
	.		.		.		
	.		.		.		
행정사무관			<u>3</u>		<u>2</u>	-1	
	.		.		.		
	.		.		.		

신 · 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484</u>		<u>480</u>	-4	
일반직 계	.		.		.		
	.		.		.		
			<u>476</u>		<u>472</u>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		.		
	.		.		.		
			<u>10</u>		<u>11</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		.		
			<u>40</u>		<u>39</u>	-1	
	.		.		.		

검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임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	<u>157</u> · ·	<u>155</u> · ·	-2
행정주사 · 감사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 관세주사 · 농업주사 · 마약수사주사 · 방송통신주사 · 보건주사 · 보호주사 · 사회복지주사 · 세무주사 · 시설주사 · 식품위생주사 · 임업주사 · 전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 통계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 ·	<u>138</u> · ·	<u>136</u> · ·	-2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87</u>	• <u>483</u>	-4
일반직 계	• • <u>479</u>	• • <u>475</u>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 <u>10</u>	• • <u>11</u>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u>40</u>	• <u>39</u>	-1
•	•	•	
•	•	•	

검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 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부감 사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임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 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	<u>157</u> · ·	<u>155</u> · ·	-2
행정주사 · 감사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 관세주사 · 농업주 사 · 마약수사주사 · 방송통신주 사 · 보건주사 · 보호주사 · 사회 복지주사 · 세무주사 · 시설주사 · 식품위생주사 · 임업주사 · 전 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 통계 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 ·	<u>138</u> · ·	<u>136</u> · ·	-2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정부합동민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56</u>	• <u>55</u>	-1
일반직 계	<u>56</u>	<u>55</u>	-1
•	•	•	
•	•	•	
행정사무관	<u>3</u>	<u>2</u>	-1
•	•	•	
•	•	•	